

의안번호	2209518
의 퇴 인	박지혜의원
회 답 일	2025.4.22.
추계번호	25D203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1항(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편익 분석의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호)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제1항(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려는 것임

[표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신설 및 강화 심사요청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1,515	1,129	819	612	842

- 개정안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의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하는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에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사회·환경적 피해(damage)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을 의미함
 - 연계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의안번호 제2209517호)이 발의되어 있음
 - 동 법률안에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와 1건당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 중에는 탄소의 배출과 관계가 없는 규제도 다수 존재하며,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계 모형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그 분석 단가도 추정하기 어려움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는데 보통 통합평가 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s, IAM)의 축약형¹⁾이 사용되는데, 모형별로 추계기간과 적용 할인율이 다르고 추계금액에서도 편차가 발생함
 - 이처럼 추계 모형이 각각 상이하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진보·보수 정권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²⁾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부 차원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한 바 없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대상 규제 건수와 분석 단가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1) DICE(Dynamic Integrated Climate and Economy)모형, FUND(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모형, PAGE(Policy Analysis of the Greenhouse Gas Effect)모형, GIVE모형(Greenhouse Gas Impact Value Estimator) 등

2) 미국 범부처 워킹그룹(Intergency Working Group)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2010년 발표 시에는 2020년 \$26.3, 2030년 \$32.8, 2050년 \$44.9로, 2016년 발표 시에는 2020년 \$42, 2030년 \$50, 2050년 \$69로, 2021년에는 2020년 \$51, 2030년 \$62, 2050년 \$85로 제시한 반면(출처: 한국금융연구원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2023.11)),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1에서 \$8 사이로 하향한 바 있음(출처: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2916>)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